Ⅲ. 최저보증 운영 현황

1. 최저보증 유형 및 수준

가. 최저보증 유형

변액연금보험은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이 투자실적 악화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사망보험금보증(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이하 'GMDB'라 함)을 제공한다.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펀드수익률과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으로 최소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해 주는 옵션으로, 보험수익자인 유족들을 투자실적 악화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보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변액연금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연금재원이 투자실적 악화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을 제공한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이하 'GMAB'라 함)은 적립금액에 관계없이 만기(제1보험기간)에 최소보증금액을 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에 적립된 금액이 최소보증금액보다 클 경우 보험회사는 이 적립금을 연금에 활용하거나 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기 전에 사망 또는 해약이 발생하는 경우 이 보증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정된 금액만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GMDB로 인해 제1보험기간 중의 투자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연금재

원을 보증할 수 있고, 이를 제2보험기간에는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공시이율형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안정된 노후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연금 지급기간에도 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지 않고 특별계정에서 계속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경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최저중도(종신)인출금보증, 최저연금액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최저중도인출금보증(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이하 'GMWB'라 함)은 제2보험기간 중에도 특별계정에서 펀드에 계속 투자하게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보증기간 동안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보증하며, 보증기간 종료 시 잔여 계약자적립금이 있을 경우 이를 환급하게 된다. 최저종신인출금보증(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이하 'GLWB'라 함)은 종신토록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보증하며, 사망 시 잔여 계약자적립금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이를 환급한다.

〈표 Ⅲ-1〉 최저보증의 유형

(단위: %)

구분	최저보증유형	보증예시	연간보증비용
사망 담보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기납입보험료	0.04~0.07
생존 담보	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기납입보험료	0.56~0.98
		Step-up	0.84~1.05
		Rachet	
		Roll-up	
	최저중도인출금보증 (GMWB)	일정 기간 또는 연령까지 매년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인출보증	0.6~0.9
	최저종신인출금보증 (GLWB)	종신토록 매년 기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인출보증	0.6~0.9
	최저연금액보증 (GMIB)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미리 정한 연금예정율로 종신 지급보증	-

주: 보증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을 따름

최저연금액보증(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 이하 'GMIB'라 함)은 만기(제1보험기간 말) 이후에 계약에서 정한 최저연금기준금액과 미리 정한 연금연율(Annuity Rate)로 종신연금 지급을 보험회사가 보증한다. 계약 시점에 최저보증연금기준금액에 미리 정해진 연금연율을 적용하여 연금 지급기간에 받게 될 최소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최소 미래소득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성과가 좋아 실제 연금기준금액이 최저보증연금기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연금기준액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연금연율에 따라 연금이 지급된다. 만기 시에 계약자적립금으로 다른 연금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게 상품이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나. 보증수준 결정

GMDB나 GMAB 보증수준은 기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 외에도 기납입보험료를 일정이율로 부리한 금액, 래칫 방식이나 셋업 방식으로 최저보증수준을 재설정하는 방식 등이 사용된다.

〈표 Ⅲ-2〉 최저보증수준 결정방식

방식	보증내용
Premium refund	• 연금 개시 시까지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보증 • 대부분의 상품은 일정비율을 100%로 설정 • 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거치기간이 길수록 일정비율이 증가하는 상품도 있음
Step-up	• 계약자 적립금이 계약 시 정해진 일정 수준(기납입보험료의 110%, 120%, 130% 등)에 도달하면 보증수준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
Rachet	• 일정주기로 계약자적립금을 파악하여 해당 시점에서의 계약자적립금이 직전 주기에 설정된 보증금액을 초과하면 그 시점 이후 보증금액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
Roll-up	• 기납입보험료를 특정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최저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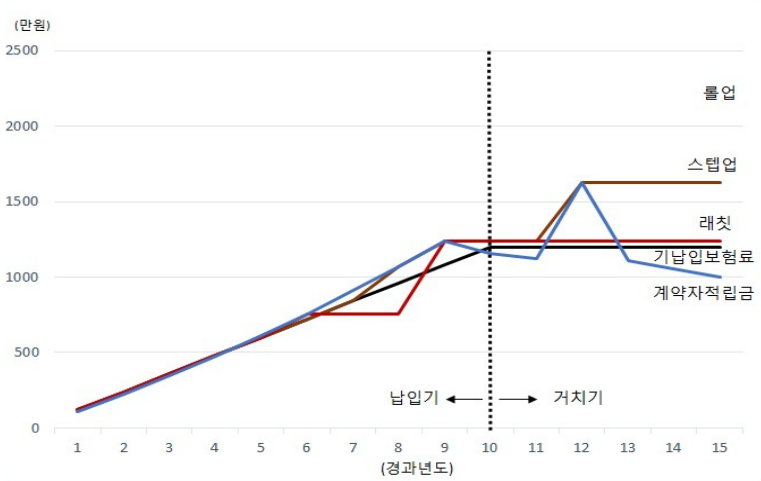
〈표 Ⅲ-3〉과 〈그림 Ⅲ-1〉은 GMDB나 GMAB 보증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 준다. 보험료는 월납으로 10만 원씩 10년간 납입된 후 5년간 거치된다. 사업비를 제외한 투자원금이 특별계정에서 계약자적립금으로 펀드에 투자된다. 기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의 경우 납입기나 거치기에 투자실적 부진으로 계약자적립금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 또는 연금적립금으로 최저보증한다. 기납입보험료 롤업 최저보증은 기납입보험료를 매년 5%씩 가산한 금액을 사망보험금 또는 연금적립금으로 최저보증한다. 스텝업보증은 기납입보험료 100%를 최저보증하지만 계약자적립금이 기납입보험료의 110%, 120%, 130%에 도달하면 최저보증수준도 기납입보험료의 100%, 120%, 130%로 증가한다. 래칫보증은 기납입보험료 100%를 최저보증하지만 3년 주기로 계약자적립금을 파악하여 계약자적립금이 3년 전에 설정된 보증금액을 초과하면 그 계약자적립금이 새로운 최저보증수준이 된다.

〈표 Ⅲ-3〉 최저보증수준 결정방식 예시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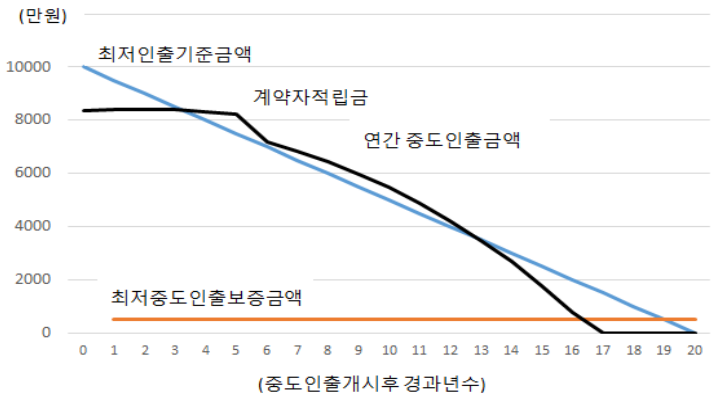
구분	경과 기간	기납입 보험료	계약자 적립금	적립률	롤업	스텝업	래칫
납입기	1년	120	109	90.6	126	120	120
	2년	240	224	93.4	264	240	240
	3년	360	346	96.2	414	360	360
	4년	480	475	99.0	576	480	480
	5년	600	612	102.0	750	600	600
	6년	720	757	105.1	936	720	757
	7년	840	909	108.2	1,134	840	757
	8년	960	1,070	111.5	1,344	1,070	757
	9년	1,080	1,240	114.8	1,566	1,240	1,240
	10년	1,200	1,153	96.1	1,800	1,240	1,240
거치기	11년	1,200	1,121	93.4	1,860	1,240	1,240
	12년	1,200	1,624	135.3	1,920	1,624	1,240
	13년	1,200	1,112	92.6	1,980	1,624	1,240
	14년	1,200	1,056	88.0	2,040	1,624	1,240
	15년	1,200	1,003	83.6	2,100	1,624	1,240

〈그림 Ⅲ-1〉 최저보증수준 결정방식 비교



〈그림 Ⅲ-2〉는 최저인출가능금액인 기납입보험료의 5%를 중도인출기간인 20년 동안 매년 최저보증하는 GMWB를 보여 주고 있다. 중도인출기간 개시 직전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인출기준금액보다 작으므로 최저인출기준금액의 5%가 20년 동안 매년 지급보증된다. 심지어 계약자 적립금이 중도 인출로 다 소진된 이후에도 최저중도인출금은 지급되게 된다.

〈그림 Ⅲ-2〉 최저인출금보증수준 결정방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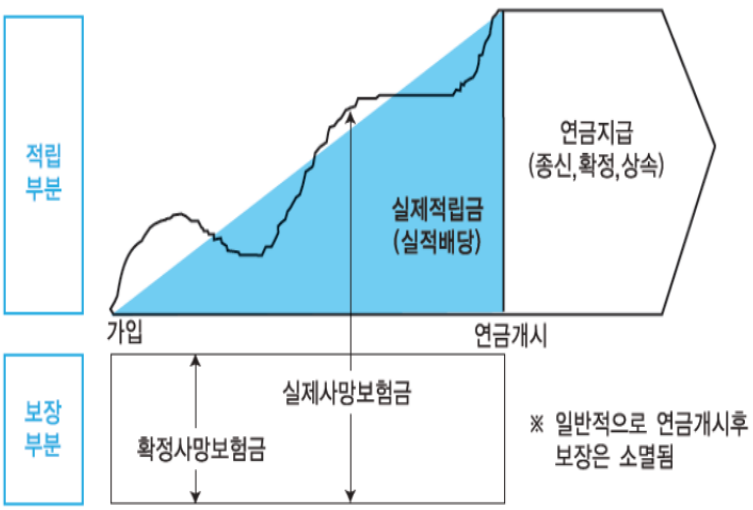


2. 최저사망보험금보증 현황

가. 개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은 사망 시 지급하는 일시금을 최저보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변액보험은 이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4] 사망 시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중도에 인출한 금액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최저보증하며, 최저보증 수준 설정을 위해 기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 외에도 기납입보험료를 일정이율로 부리한 금액, 래칫 방식이나 셋업 방식으로 최저보증수준을 재설정하는 방식 등이 사용된다.

〈그림 Ⅲ-3〉 변액연금의 도해



자료: 생명보험협회(2016), p. 183

4)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제7호: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Ⅲ-3〉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증해주는 변액연금을 도해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변액연금의 보증형태이다.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주계약의 확정사망보험금에 특별계정의 적립금을 합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기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연금 개시 직전에는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과 기납입보험료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개시 후에는 사망보장은 소멸한다.

2017년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생명보험회사 25개사 중 변액연금을 판매 중인 회사는 18개사이며, 7개사는 변액연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판매 중인 변액연금 총 상품 수는 36개로 모두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고 있다.

나. 기납입보험료 최저보증

기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계약에서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납입보험료를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하는 최저사망적립금 형태로 보증한다.

다. 기납입보험료 스텝업 최저보증

사망보장을 강화하여 사망 시 기납입보험료 이상을 최저보증하는 기납입보험료 스텝업 상품을 4개사가 4개 상품을 판매 중이다.

미래에셋생명의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과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리셋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 지급개시 나이 3년 전 계약해당일까지 계약자적립금이 단계별 목표기준금액에 도달할 경우 초과성과금액 합계액을 최저사망지급금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추가보증하는 옵션을 선택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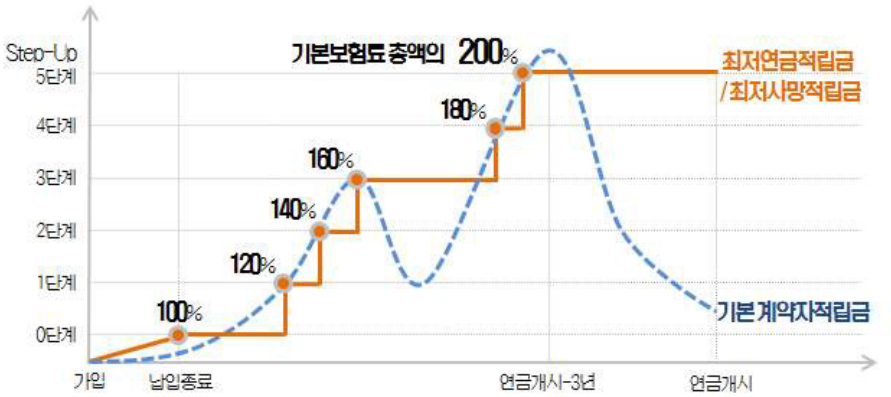
〈표 Ⅲ-4〉「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의 스텝업 최저보증

단계	목표기준금액
Step 1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120%
Step 2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150%
Step 3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180%
Step 4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주: 기본보험료 합계액은 계약 당시 납입기간까지 납입하기로 한 총 기본보험료 합계액(특약보험료 및 추가보험료 제외)

삼성생명의「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사망지급금으로 보증한다. 보험료 납입 후 연금 개시 전까지는 매년 평가일마다 계약자적립금과 기납입보험료의 130%를 비교하여 계약자적립금이 최초로 기납입보험료의 130%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기납입보험료의 130%를 최저사망지급금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증한다.

〈그림 Ⅲ-4〉「Safe Plus 신한변액연금보험」의 스텝업 최저보증



자료: 신한생명,「Safe Plus 신한변액연금보험」상품요약서

신한생명의「Safe Plus 신한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적립금과 최저연금적립금을 스텝업 방식으로 보증한다. Step-up 기간(계약일로부터 연금 개시 나이 3년 전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 계약자적립금이 Step-up 단계별 목표기준금액을

달성할 경우, 초과성과금액 합계액을 「사망 시점 또는 연금 개시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추가하여 보증한다.

라. 기납입보험료 롤업 최저보증

생보2개사가 기납입보험료 롤업 상품을 각각 1개씩 판매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미리 보는 내 연금 변액연금보험」은 기본형의 경우 사망적립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하지만, 보증강화형의 경우 사망적립금으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최저보증한다. 최저연금기준금액이란 납입기간 동안에는 기납입보험료의 매년 5/100 해당액을,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 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까지는 매년 4/100 해당액을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이다.

DGB생명의 「평생소득보장 변액연금보험」도 기본형의 경우 사망적립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하지만 사망보증강화형의 경우 사망적립금으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보증한다. 최저연금기준금액이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기납입보험료의 매년 5/100 해당액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기납입보험료에 더한 금액(연단리 5% 기준)이다. 최저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20년의 기간과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적은 기간을 한도로 한다.

마. 기납입보험료 래칫 최저보증

삼성생명의 「New인덱스 변액연금보험」은 사망지급금과 연금적립금을 래칫 형식으로 최저보증하는 국내 유일한 상품이다. 매 3년(1종) 또는 매 5년(2종) 마다 계약자적립금이 직전 평가일의 보증기준금액보다 큰 경우 보증기준금액이 갱신된다(120% 한도). 피보험자 사망 시 최저보증금액은 보증기준금액에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다(기납입보험료의 200% 한도).

3. 최저연금적립금보증 현황

가. 개요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은 연금 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최저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보증 수준은 최저사망보험금보증과 마찬가지로 기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 외에도 기납입보험료를 일정이율로 부리한 금액, 래칫 방식이나 셋업 방식으로 최저보증수준을 재설정하는 방식 등이 사용된다.

36개 판매상품 중 연금적립금을 기본 또는 선택적으로 최저보증하고 있는 상품수는 27개로 조사되었다. 이중 3개 상품은 연금적립금보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최저연금적립금보증 기능이 없이 설계된 상품도 최근 많이 출시되어 9개 상품에 달하고 있다. 최저중도(종신)인출금을 보증하는 변액연금상품의 경우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이라는 용어 대신 최저연금기준금액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연금 개시 직전의 연금적립금이 연금 개시 직후의 최초 연금기준금액이 된다.

연금적립금(최초 연금기준금액)이 기납입보험료 이상 되도록 스텝업이나 롤업된 상품이 22개로 최근 변액연금상품이 연금적립금보증강화형과 미보증형으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Ⅲ-5〉 판매 중 변액연금상품 생존보증 운영현황

회사	상품명	생존보증 형태
한화생명	100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어린이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알고 받는 변액연금보험	**종신인출금**
	하이브리드 변액연금보험	**중도인출금**
ABL생명	하모니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하모니 변액연금보험__A+GA	-
	투자에 강한 변액연금보험	-
삼성생명	New인덱스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우리아이 변액연금보험	**종신(중도)인출금**
흥국생명	우리아이 스타트업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행복한 선택 스텝업 변액연금보험	**종신(중도)인출금**
교보생명	미리 보는 내 연금 (무)교보변액연금보험Ⅱ	**종신인출금**
	더 드림 (무)교보변액연금보험Ⅲ	**종신인출금**
	더 드림 (무)교보VIP변액연금보험Ⅱ	**종신인출금**
신한생명	Power Plus (무)신한변액연금보험	-
	Safe Plus (무)신한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DB생명	스텝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KDB생명	트리플에셋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동양생명	수호천사 리셋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메트라이프생명	변액연금보험 동행	-
PCA생명	파워 리턴 변액연금보험 III	연금적립금
	프리 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 II	-
DGB생명	행복파트너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평생소득보장 변액연금보험	**종신인출금**
KB생명	KB star 변액연금보험Ⅱ	연금적립금
AIA생명	THE 좋은 프레스티지 변액연금보험Ⅱ	-
푸르덴셜생명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중도인출금**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중도인출금**
	VIP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New 100세 플러스 변액연금	연금적립금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연금재원미보증형)	-
ING생명	모으고 키우는 변액연금보험	-
	오렌지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오렌지 케어플러스 변액연금보험	-

주: 처브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하나생명, 현대라이프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농협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변액연금을 판매하지 않음

나. 기납입보험료 롤업 최저보증

한화생명의 「100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기본형(기납입보험료 최저보증)과 미보증형, 보증강화형으로 설계되었다. 보증강화형의 경우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에 따라 아래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율을 기납입보험료에 적용한 금액을 최저보증한다.

〈표 Ⅲ-6〉 「100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율

(단위: %)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13년	14년	15년	· · ·	27년	28년	29년	30년 이상
보증비율	101.5	102.5	103.5	· · ·	115.5	116.5	117.5	118.5

다. 기납입보험료 스텝업 최저보증

DB생명의 「스텝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스텝업(Step-up) 기간 동안 계약자적립금이 Step별 목표기준금액 달성시 최저연금적립금의 보증이 "초과성과금액" 만큼 단계적으로 증액되지만, 발생된 초과성과금액은 채권형으로 의무이전된다.

스텝업 기간은 1종(적립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의 다음날부터 연금 지급개시 나이 3년 전 계약해당일까지이며, 2종(거치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연금 지급개시 나이 3년 전 계약해당일까지이다. Step별 목표기준금액은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이전에 납입한 총 보험료의 100%, 130%, 160%, 190%, 220%, 250%, 300%, 350%, 400%, 450%, 500%이다. 다만,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후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100% 보증한다. 초과성과금액은 Step-up 기간 동안 계약자적립금이 Step별 목표기준금액 달성 시, 해당시점의 Step별 목표기준금액과 직전에 달성한 Step별 목표기준금액의 차액이다.

KDB생명의 「트리플에셋 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금보증형(스텝형)에서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부터 연금 개시 나이 3년 전 계약해당일" 기간 동안 매일 평가한 계약자적립금이 미리 정해놓은 단계별 목표기준금액을 제3영업일 연속

으로 달성할 경우 초과성과금액 합계액을 최저연금적립금에 더하여 보증한다. 스텝별 목표기준금액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한 총 기본보험료의 100%, 130%, 160%, 190%, 220%, 250%, 300%, 350%, 400%, 450%, 500% 해당금액이다. 다만,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후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100% 보증한다.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추가납입 직전 단계별 목표기준금액에 추가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추가납입 후 단계별 목표기준금액으로 한다.

ING생명의 「오렌지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 지급개시일 3년 전 계약해당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단계별 목표기준금액(납입예정기본보험료의 100%에서 200% 까지 단계별로 20%씩 5단계 상향)에 도달하는 경우 초과성과금액 합계액을 최저연금적립금에 합산하여 보증한다.

4. 최저중도인출금보증 현황

가. 개요

최저중도인출금보증은 보통 보험료납입기간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약자적립금이 특별계정에 남아 계속 투자되지만 일정기간 동안 기준금액의 일정비율의 지급을 보증한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변액연금 가입시점부터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미래 일정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최저인출금액을 예상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기간에도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도인출금보증은 인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약자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잔존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공시이율형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변액연금에서 인출금은 보험료납입기간이나 거치기간 중 계약자가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보통 연간 12회까지 별도 수수료 없이 일정 한도 이하의 금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중도인출금보증은 이와 별개로 「실적배당보증연금」의 형태로 제공되며,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는 다른 공시이

율형 연금과 함께 선택특약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36개 판매상품 중 중도인출금보증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품 수는 5개로 나타났다.

나. 하이브리드 변액연금보험

한화생명의 「하이브리드 변액연금보험」은 변액연금 주계약과 금리연동형 연금특약으로 각각 보험료 선택 및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 적립금 이전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재배분이 가능한 상품이다. 주계약에서는 중도인출금인 스마트업자금을 연금 개시 전 20년 동안 최저보증하며, 이후 계약자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공시이율형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최저사망적립금은 스마트업 개시 전 보험기간은 사망시점의 기납입보험료로 하고, 스마트업자금 지급기간은 사망 시점의 기납입보험료에서 기지급된 스마트업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스마트업자금이란 연금 개시 전 20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총 20회)에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자금이다. 스마트업자금은 해당 스마트업자금 지급시점의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최저스마트업자금은 스마트업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의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다.

스마트업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산출한 스마트업자금이 스마트업 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에 산출된 최저스마트업자금의 105% 이상에서 110% 미만인 경우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110% 이상인 경우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새로운 최저스마트업자금이 된다. 스마트업자금 지급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최초계약해당일의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스마트업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의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에서 기지급된 스마트업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최저 한도로 보증한다.

다. 하모니 변액연금보험

ABL생명의 「하모니 변액연금보험」은 업계 최초로 보증비용 없이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는 변액연금상품으로 연금 개시 후에도 연금재원을 계속해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이 선택특약으로 제공된다. 수수료 없이 최저연금액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계약의 특성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매일 성장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이 최적으로 조절되는 펀드자동재배분 시스템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이다.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경과확정보증금으로 1차월도에는 계약일의 기본보험료에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별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2차월도 이후에는 "기납입보험료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과 매월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과 "직전월도 월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한다.

〈표 Ⅲ-7〉 「하모니 변액연금보험」의 보험기간별 연금적립금보증비율

구분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별 보증비율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15년 이하	100%
	16~44년	85% + 1% ×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연수
	45년 이상	130%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이후 재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환일시금은 전환시점의 전환 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으로 하며, 전환시점은 전환 전 계약의 연금 개시일이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사망지급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사망지급금을 지급한다.

〈표 Ⅲ-8〉「하모니 변액연금보험」의 연금보증비율

(단위: 세, %)

연금 개시 연령	연금 보증 비율	연금 개시 연령	연금 보증 비율	연금 개시 연령	연금 보증 비율	연금 개시 연령	연금 보증 비율
45	2.5328	54	2.8337	63	3.2809	72	4.0156
46	2.5613	55	2.8745	64	3.3444	73	4.1275
47	2.5908	56	2.9172	65	3.4115	74	4.2480
48	2.6215	57	2.9619	66	3.4826	75	4.3781
49	2.6534	58	3.0088	67	3.5580	76	4.5191
50	2.6866	59	3.0579	68	3.6381	77	4.6723
51	2.7211	60	3.1095	69	3.7233	78	4.8394
52	2.7570	61	3.1637	70	3.8143	79	5.0225
53	2.7945	62	3.2207	71	3.9115	80	5.2239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직전 계약자적립금 수익률이 반영된 체증실적배당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기본실적배당연금 지급률」은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적배당연금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직전 계약자적립금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실적배당연금액이 최저실적배당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실적배당연금액을 실적배당연금으로 지급된다. 최저실적배당연금액은 보험기간(100세 만기)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실적배당연금액으로서 전환일시금 × 연금보증비율을 최저실적배당연금액으로 보증한다.

라. 우리아이 변액연금보험

삼성생명의「우리아이 변액연금보험」은 자녀의 미래 노후설계자금을 마련하고 동시에 투자기능도 갖춘 어린이전용 연금보험이다.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사망 시점의 이미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를 최저보증한다. 연금 개시 직전에는 보증형에 한해 계약자적립금이 기납입보험료 이상이 되도록 최저보증하며 주식 편입비율을 제한한다(1종: 30%, 2종: 50%).

연금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지급재원으로 하여 100세 또는 종신까지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을 받는 실적배당형(종신)연금전환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100세 또는 종신까지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실적배당형연금 지급률」을 지급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 생존 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실적배당형연금으로 실적배당형연금재원에 보증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장한다.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사망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사망지급금을 지급한다.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생존 시 100세 계약해당일에 실적배당형연금 및 잔여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표 Ⅲ-9〉 「우리아이 변액연금보험」의 연금 지급률과 보증 지급률

연금 지급 개시 나이	실적배당형 연금 지급률	보증 지급률 (100세까지 지급)	보증 지급률 (종신까지 지급)
45~49세	4.75%	1.66%	1.60%
50~54세	5.00%	1.82%	1.70%
55~59세	5.25%	1.98%	1.80%
60~64세	5.50%	2.20%	2.00%
65~69세	5.75%	2.45%	2.25%
70~74세	6.25%	2.80%	2.50%
75~79세	6.75%	3.15%	2.75%
80세	7.50%	3.75%	3.25%

주: 계약자적립금이 실적배당형연금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실적배당형연금 지급률에 1%를 추가로 지급함

마. 우리아이 스타트업 변액연금보험

흥국생명의 「우리아이 스타트업 변액연금보험」은 20세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4년 동안 매년 15%씩, 총 60%를 교육자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적립금은 4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교육보험 형태의 변액연금이다. 피보험자가 20세, 21세, 22세, 23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특별계정

의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지급한다(교육자금형).

〈표 Ⅲ-10〉「우리아이 스타트업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률

연금 개시 나이	최저연금 적립금
45세~54세	기납입보험료의 90%
55세~64세	기납입보험료의 100%
65세~74세	기납입보험료의 110%
75세 이후	기납입보험료의 120%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한다. 연금 지급개시 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표 Ⅲ-10〉과 같이 보증한다.

바.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푸르덴셜생명의「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개시 시점까지 계약유지 시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보증하는 Step-up 기능을 통해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를 Step-up 보증금액으로 보장한다. 사망보장기간(보험계약일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기간 종료일) 중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 시점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 개시 시 적립금과 Step-up 보증금액 중 큰 금액의 8%를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10년간 지급한다. Step-up 보증금액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증기준액을 말한다. 보증기준액이란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 완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 평가일마다 재산출하여 보증기준액 고정기간 동안 변동없이 적용하는 금액으로, 해당 평가일 직전의 계약자적립금이다(보험계약대출적립금 포함). 단, 보증기준액은 해당 평가일

직전 Step-up 보증금액의 100%를 최저한도로 하고, 120%를 최고한도로 한다. 평가일이란,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 완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 개시 시점에 해당하는 연계약해당일까지의 매년 계약해당일이다. 보증기준액 고정기간이란, 해당 평가일부터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평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이후 연금 지급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Step-up 보증금액의 20%를 최저보증한다.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 이후, 연금 지급기간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을 지급한다.

5. 최저종신인출금보증 현황

가. 개요

최저종신인출금보증은 보통 보험료 납입기간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종신 동안 기준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 보증하므로 변액연금 가입시점부터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미래에 사망 시까지 수령할 수 있는 최저인출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최저종신인출금보증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준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 보증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잔존계약자적립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최저종신인출금보증은 「실적배당종신보증연금」의 형태로 제공되며,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는 다른 공시이율형 연금과 함께 선택특약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6개 판매상품 중 종신인출금보증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품 수는 7개로 나타났다.

나. 알고 받는 변액연금보험

한화생명의 「알고 받는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기준금액(다만, 계약자적립금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 월지급액을 피보험자가 월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한다. 연금기준금액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 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이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인출신청 직후 연금기준금액」} = \text{인출신청 직전 연금기준금액} \times \frac{\text{인출신청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신청금액}}{\text{인출신청 직전 계약자적립금}}$$

최저연금기준금액은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 개시 나이 계약해당일까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다.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납입기간 동안 매년 (1종: 5/100, 2종: 2.5/100) 해당액을,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 나이 계약해당일까지 매년 (1종: 4/100, 2종: 2/100) 해당액을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이다. 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률은 기본지급률 × (1 + 투자실적가산율 + 장기유지가산율)이다.

〈표 Ⅲ-11〉 「알고 받는 변액연금보험」의 기본지급률

연금 개시 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5~59세	0.30%	0.27%
60~69세	0.34%	0.29%
70~80세	0.37%	0.37%

〈표 Ⅲ-12〉「알고 받는 변액연금보험」의 투자실적가산율

연금 개시 나이 계약 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 대비 계약자적립금의 비율 (계약자적립금 / 최저연금기준금액)	가산율
60% 미만	3%
60% 이상 90% 미만	20%
90% 이상	30%

〈표 Ⅲ-13〉「알고 받는 변액연금보험」의 장기유지가산율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 개시 나이 - 가입나이)	가산율
5~19년	0%
20~29년	10%
30~39년	20%
40년 이상	3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사망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적립금을 지급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의 최저사망적립금은 기납입보험료에서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다.

다.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

삼성생명의「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사망 시에는 최저사망 지급금(사망일의 최저보증금액)을 최저보증한다.

최저사망지급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지급금이다.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기납입보험료가 되며,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기납입보험료에서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시 실적배당종신연금을 지급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안 좋은 경우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을 최저보증한다.

연금기준금액은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납입기간 동안 매년 5/100 해당액을, 납입기간 이후 연금 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까지 매년 4/100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자계산하여 더한 금액이다.

실적배당종신연금은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에 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을 최저한도로 보증 지급한다. 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률(%)은 「기본지급률 × (1 + 장기유지가산율)」이며,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연금액으로서 연금기준금액에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다.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률은 「기본지급률 × (1 + 장기유지가산율 + 투자실적가산율)」이다.

〈표 Ⅲ-14〉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기본지급률

연금 개시 나이	남자	여자
55~59세	3.45%	3.25%
60~69세	3.95%	3.70%
70~79세	4.45%	4.30%
80세 이상	4.95%	4.95%

〈표 Ⅲ-15〉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장기유지가산율

연금 개시 전 유지기간	가산율
20년 이상	10%
30년 이상	20%
40년 이상	30%

〈표 Ⅲ-16〉「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투자실적가산율

계약자적립금 ÷ 연금기준금액	가산율
60% 이상 90% 미만	(계약자적립금 ÷ 연금기준금액) - 60%
90% 이상	20% + [(계약자적립금 ÷ 연금기준금액) - 80%] × 70%

라. 행복한 선택 스텝업 변액연금보험

흥국생명의「행복한 선택 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은 통상 3~5년 간격으로 설정되는 최저연금적립금 스텝업 주기를 1년 단위로 줄인 상품이다.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하며,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의 최저한도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한다.

투자연금종신(10년, 20년)형에서는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기준금액에 연금 지급 개시 나이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연금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시 계약은 소멸되며, 이 때 사망 시점의 기납입보험료를 최저한도로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최저보증금액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매 1년 계약해당일을 평가일로 하며, 평가일의 계약자적립금이 평가일 직전 최저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최저보증금액으로 재설정되지만 기납입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한다. 전 평가일부터 이후 평가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있는 경우 직전 평가일의 최저보증금액에 납입한 보험료가 가산된다. 최저보증금액을 재설정할 경우 평가일 직전 최저보증금액의 110% 및 기납입보험료의 300%를 초과할 수 없다.

〈표 Ⅲ-17〉「행복한 선택 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의 투자연금 지급률

연금 지급 개시 나이	투자연금종신형	투자연금 10년형	투자연금 20년형
45~49세	3.85%	10.75%	6.25%
50~54세	4.10%		
55~59세	4.35%		
60~64세	4.60%		
65~69세	5.10%		
70~74세	5.35%		
75~79세	5.60%		
80세	6.10%		

연금기준금액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최저보증금액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이다. 그 후 매년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연금기준금액보다 클 경우 계약자적립금을 연금기준금액으로 재설정한다. 연금기준금액을 재설정할 경우 계약해당일 직전 연금기준금액의 110% 및 기납입보험료의 300%를 초과할 수 없다. 지급률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기준금액 대비 지급되는 보증연금액의 비율이다.

투자연금종신형(GLWB)은 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시 계약은 소멸되며, 이때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한다. 투자연금 10년형 및 투자연금 20년형(GMWB)은 연금 지급기간(10년, 20년)동안 지급하며, 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연금 및 잔여 계약자적립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보증강화형의 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를 최저사망적립금으로 보증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의 최저사망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보증강화형의 경우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다.

마.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II

교보생명의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Ⅱ」은 가입할 때 장래 받을 월 연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종신인출금을 최저보증하는 변액연금상품이다.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보증강화형의 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를 최저사망적립금으로 보증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의 최저사망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보증강화형의 경우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연금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증 지급한다. 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 지급 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이다. 보증강화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직전 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이다. 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률은 「기본지급률 × (1 + 투자실적가산율 + 장기유지가산율)」이다.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 지급 개시 나이 계약해당일까지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납입기간 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5/100 해당액을,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 지급 개시 나이 계약해당일까지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4/100 해당액을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이다.

〈표 Ⅲ-18〉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Ⅱ」의 기본지급률

연금 개시 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5~59세	0.29%	0.27%
60~69세	0.33%	0.31%
70~79세	0.37%	0.36%
80세	0.41%	0.41%

〈표 Ⅲ-19〉「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Ⅱ」의 투자실적가산율

연금 개시 나이 계약 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 대비 계약자적립금의 비율 (계약자적립금 / 최저연금기준금액)	가산율
60% 미만	0%
60% 이상 90% 미만	15%
90% 이상	30%

〈표 Ⅲ-20〉「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Ⅱ」의 장기유지가산율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 개시 나이 - 가입나이)	가산율
5~19년	0%
20~29년	10%
30~39년	20%
40년 이상	30%

바. 더 드림 교보변액연금보험

교보생명의「더 드림 교보변액연금보험」은 월지급식 실적배당 연금을 지급하는 최초의 상품이다.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증형(1종) 및 보증형(2종)의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에서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미보증형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기준금액에서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다.

보증형(1종) 및 보증형(2종)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100%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장한다.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이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을 보증 지급하는 것

으로서,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은 연금 지급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다.

연금 지급기준금액이란 연금 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연금적립금 중 큰 금액에 실적배당종신연금형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이후 연금 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마다 계약자적립금과 직전 연금 지급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연금 지급기준금액으로 재설정한다. 연금 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은 연금 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매 3년 계약해당일이다.

〈표 Ⅲ-21〉「더 드림 교보변액연금보험」의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

연금 개시 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5~59세	0.30%	0.29%
60~69세	0.35%	0.33%
70~79세	0.40%	0.39%
80세	0.44%	0.44%

사. 평생소득보장 변액연금보험

DGB생명의 「평생소득보장 변액연금보험」은 일시납변액연금보험으로 거치기간(최대 20년) 중 연단리 5%로 증가된 연금기준금액으로 산출한 실적배당평생연금을 최저 보증한다.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형의 경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에 보장계약준비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사망한 날의 기납입한 보험료에서 실적배당평생연금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에 보장계약준비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실적배당평생연금이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기준금액에 실적배당평생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기준금액에 실적배당평생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보증 지급한다.

연금기준금액이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 실적배당평생연금 및 최저사망적립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 지급개시 나이 연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해당 금액은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한다.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기준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5/100 해당액을 해당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최저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까지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이다(연단리 5% 기준). 최저연금기준금액 증액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20년의 기간과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작은 기간을 한도로 한다.

〈표 Ⅲ-22〉「평생소득보장 변액연금보험」의 실적배당 평생연금 지급률

연금 개시 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45~49세	3.25%	3.10%
50~54세	3.50%	3.35%
55~59세	3.75%	3.60%
60~64세	1.00%	3.80%
65~69세	4.25%	4.00%
70~74세	4.50%	4.25%
75~79세	4.75%	4.50%
80~84세	5.25%	5.00%
85세 이상	6.00%	5.50%

아.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푸르덴셜생명의「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연금 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부터 노후소득인출 개시 시점까지 노후소득인상률로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계약자는 특별계정 투입일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 노후소득인출을 신청할 수 있

다. 계약자는 원하는 금액을 연간 횟수 한도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차년도 이후 노후소득보증금액은 감소한다.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은 기본보험료에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며, 노후소득보증금액은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최초로 노후소득인출을 신청한 날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이다. 노후소득보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노후소득 인상률은 연복리 5%이다.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은 노후소득보증금액에서 해당 보험연도의 누적 노후소득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후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은 매년 연계약해당일마다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설정된다. 단,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노후소득보증금액에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을 더하여 보증하지는 않는다.

〈표 Ⅲ-23〉「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의 노후소득보증금액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40세	3.00%	52세	3.48%	64세	3.96%
41세	3.04%	53세	3.52%	65세	4.00%
42세	3.08%	54세	3.56%	66세	4.04%
43세	3.20%	55세	3.60%	67세	4.08%
44세	3.16%	56세	3.64%	68세	4.12%
45세	3.20%	57세	3.68%	69세	4.16%
46세	3.24%	58세	3 72%	70세	4.20%
47세	3.28%	59세	3.76%	71세	4.24%
48세	3.32%	60세	3.80%	72세	4.28%
49세	3.36%	61세	3.84%	73세	4.32%
50세	3.40%	62세	3.88%	74세	4.36%
51세	3.44%	63세	3.92%	75세	4.40%

노후소득인출을 할 경우 노후소득인출금액만큼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고 계약자적립금이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노후소득보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을 해당 월계약해

당일에 일시에 지급한다. 이후 피보험자가 연금 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하며, 사망 시에 최저사망적립금으로 사망 시점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한다.

6. 시사점

변액연금에서 최저보증이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한 배경은 보험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바라볼 수 있다. 보험수익자인 유족을 투자실적 악화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사망보험금보증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피보험자를 투자실적 악화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인 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이 도입되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금리로 노후자금의 조기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 지급시기에도 적극적인 투자행위가 필요하게 되어 연금수급자를 투자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저중도인출보증이나 최저종신인출금보증도 도입되었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보증비용 부담으로 변액연금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증리스크 대비를 위해 보증준비금이나 자본금 추가 적립, 헤징 등 리스크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최근 무보증 투자형 변액연금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세계적 추세이다.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의 변액보험 상품이었다. 변액연금은 최저사망보험금과 함께 최저연금적립금을 의무 보증토록 하였으나 감사원의 2014년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결과 “변액보험 최저연금적립금의 보증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다.

수익률 제고와 보증비용 부담 경감,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6년 4월 이후에 판매한 변액연금의 최저적립금보증 여부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변액연금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을 선택하지 않고 연금 개시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원금손실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IFRS17이 도입되고 보증리스크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막대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고 가입자 입장에서도 높은 보증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연금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는 변액연금상품의 출시와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저보증이 없는 변액연금상품은 펀드 등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성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